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9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최수진·한지아·신성범

유용원 • 박정하 • 구자근

김소희 • 김예지 • 성일종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입주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 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 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 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 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 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 ---2030년 12월 31일-----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2. ----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